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
재택근무 도입방법과 근로시간관리 및 지원금

1. 서설

정부는 수도권에서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가 시행되고 사태 추이를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것인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. 만약 **3단계로 격상 시**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경우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은 재택근무, **민간기업은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**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재택근무가 실시될 경우 도입방법과 근로시간관리 및 관련 정부 지원금에 대해 **2020.4.2.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"재택근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Q&A"**를 토대로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2.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요약[1)]

□ 재택근무란?

○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**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**하는 근무유형

□ 재택근무의 도입

○ 취업규칙,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**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**므로 별도의 **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음**

○ 별도의 **규정이 없는 경우**에는 원칙적으로 **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**

* 다만, 코로나19 발생 등 **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**가 있는 경우에는 **근로자와 협의 거쳐 시행가능**

1) 고용노동부 재택근무가이드 주요내용 및 Q&A(2020.4.2), 1쪽 인용,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바랍니다.

○ 정부는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 **간접노무비 및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**

□ 근로시간, 연장근로 등

○ **통상적인 근로시간제**를 적용하는 경우, 노사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, 휴게시간 등 **일반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음**

○ 사업장 밖 근무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**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**하거나 **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**을 업무수행에 **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**할 수 있음

○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**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로 정한 업무**라면, **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** 간주 가능

○ 재택근무 시 실제 연장·야간근로를 수행한 경우, **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**

* 분쟁 예방을 위해 연장·야간근로에 대한 승인, 확인 등 **절차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**

□ 복무관리, 재택근무 비용 등

○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**복무규정 등은 그대로 적용**, 근무지 이탈 및 사적용무 등으로 **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**할 필요

○ 재택근무자의 **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** 필요

○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**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**

* 다만, 통상근무(사업장내 근무) 하에서도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근로자 부담 가능

□ 산업재해 발생

○ 재택근무에 따른 **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**에 해당

*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·구체적으로 판단

3. 재택근무규정 취업규칙 예시[2)]

▪ 제00조 재택근무

① 회사는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택 등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재택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. 다만 수행업무에 따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,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.

③ 재택근무자가 연장, 야간, 휴일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때에는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

④ 회사는 업무회의, 업무지시, 업무수행평가, 교육, 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출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택근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, 재택근무자는 월 정기 출근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4. 재택근무제 정부 간접노무비 지원제도[3)]

□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

○ **유연근무제(재택근무 등)**를 활용하는 **사업주**에 대해 **간접노무비** 지원

- **(지원대상)**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**우선지원 대상기업** 및 **중견기업**의 **사업주**

2) 고용노동부 재택근무가이드 주요내용 및 Q&A(2020.4.2), 4쪽 인용
3) 고용노동부 재택근무가이드 주요내용 및 Q&A(2020.4.2), 5쪽, 14쪽 인용

- **(지원요건)** ①**사업계획서**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·승인, ②**근로계약서** 작성 및 **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**(시차, 선택 해당) ③**전자·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**

- **(지원내용)** 근로자의 **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**에 따라 **최대 1년간 520만원** 지원

*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

<지원 기준>

기준	연간 총액		1주당 지급액	
	주 3회 이상	주 1~2회	주 3회 이상	주 1~2회
지원금액	520만원	260만원	10만원	5만원

○ **지원절차 간소화(2.25.~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한시운영)**

- 사업신청서 **심사 횟수 확대**(월 1회→수시), 재택근무제 **증빙 완화**(전자식 근태관리 시스템→이메일·카톡 등도 허용), **지원 대상 근로자 확대**(입사 1개월 내 근로자 등도 지원 가능)

별첨 : 고용노동부_재택근무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 Q&A. 끝.

제361호

2020. 08. 31.

노무법인 두레

※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.